

최저임금과 노동자운동, 일보전진을 위한 과제

- 2010년 최저임금 투쟁 평가와 2011년 투쟁 과제

2010.08.06

노동자운동연구소(준)

○ 국민임투? 예년과 별반 다르지 않았던 최저임금 투쟁

2011년에 적용 될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1% 오른 4천320원으로 확정되었다. 민주노총 요구안은 2010년보다 26% 인상된 시급 5,180원이었으나 5.1% 인상에 그쳤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투쟁을 국민임투로 만들겠다고 선언했지만 최저임금 투쟁은 올해도 예년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무엇보다 투쟁 주체들이 여성연맹과 공공노조 금속노조 일부사업장 단위를 넘어 확대되지 못했다.

본보고서는 최저임금의 의미를 다시 살펴보고, 앞으로 최저임금투쟁이 보다 전진하기 위해 필요한 과제들을 살펴본다.

○ 큰 폭의 최저임금의 인상이 중요한 이유

1) 임금을 둘러싼 이념 대립의 최전선

최저임금을 둘러싼 투쟁은 '임금'에 관한 침예한 이념적 대립의 공간이다. 자본은 노동

자의 임금 인상을 막기 위해 최저임금 논의가 시작되는 5월부터 최저임금이 인상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를 늘어놓는다. 그리고 같은 논리로 6월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노동조합의 임금 인상 투쟁을 노조 이기주의, 대공장 이기주의 등으로 매도한다. 이들에게 법적 규제나 노동조합은 노동시장의 임금 균형을 왜곡하는 똑 같은 존재다. 매년 민주노총은 저임금 노동자들의 최저임금투쟁과 정규직 노조의 임단투로 분리되지만 사실 자본의 대응은 하나의 선상에서 이루어진다.

최저임금 인상을 둘러싸고 매년 경제학적 논쟁이 있어왔다. 시장 근본주의자들은 최저임금제도가 노동 시장의 균형 가격(임금) 이상의 임금을 설정해 일자리를 감소시킨다고 주장해 왔다. 20세기 초 미국과 유럽에서 최저임금제도가 성립한 이후부터 근 백년이 넘게 이어진 논쟁이다. 올해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경영자총연합회와 시장 근본주의 경제학자들이 내세운 주장도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최저임금이 오르면 기업들이 일자리를 줄이게 된다는 것이었다.

사실 이들 시장 근본주의자들의 주장은 경제학적으로도 현실적으로도 이미 시효가 만료된 것들이다. 이들의 경제학 모델은 가장 이상적 상태에서 최저임금이 균형 가격보다 1원이 높으면 실업자가 없어져야 하고, 반대로 1원만 낮아도 모든 노동자들이 자발적 실업 상태가 되어 버린다. 하지만 세계 어느 곳에서도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다. 프랑스는 최저임금이 중위 임금 대비 63% 가까이 되지만 최저임금 때문에 실업자가 늘어났다는 실증 분석은 보기 힘들다. 비교적 뒤늦게 최저임금제도를 도입했지만 유럽연합 내에서도 중상 수준의 최저임금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영국에서도 최저임금제도로 인한 긍정적 결과들이 고용창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연구 결과가 대다수다¹⁾. 한국의 경우도 최저임금이 12.3%나 인상된 2007년에 취업자 수는 오히려 28만 명이 늘어났다.

미국 경제 정책의 수장인 버냉키는 2006년 연설에서 시장 근본주의자들의 주장을 비꼬며 경제학자들이 언제 최저임금 인상이 일자리 감소로 이어진다는 합의를 했냐고 되묻기도 했다. 2001년 노벨 경제학 수상자인 스티글리츠는 최저임금인상이 일자리감소를 가져오지도 않을 뿐더러 그렇다 해도 최저임금인상으로 인한 긍정적 효과가 그 모든 감소분을 덮고도 남는다고 이야기했다²⁾. 한국에서 최저임금 결정시 경제학적 용어들을 빌어 일자리감소를 걱정하는 경제학자들의 곡학아세는 부끄럽기 짝이 없는 것들이다.

1) 채준호(2006), "영국의 최저임금제도의 최근 동향 분석", 국제노동브리프 2006년 8월호

2) Liana Fox(2006), "Minimum wage trends : Understanding past and contemporary research", EPI Briefing Paper #178

노동자운동은 이러한 점에서 최저임금 투쟁에서 보다 많은 최저임금을 관철시키며 단결된 투쟁으로 임금 문제에 관한 자본의 이데올로기에 맞서야 한다. 최저임금투쟁은 최저임금인상으로 직접적인 임금 인상 혜택을 보는 일부 노동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사회에서 임금 문제를 다루는 방식에 관한 자본과의 이데올로기 싸움이다.

2) 경제 위기 과정에서의 임금 정책

다음으로 경제위기라는 조건에서 최저임금은 노동자들의 제도적 임금 방어 수단이라는 측면과 거시 경제 정책 측면 양자 모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2007년부터 시작된 세계 경제 위기가 단순한 경기 변동이 아니라 이윤율 저하와 금융세계화라는 자본주의의 구조적 모순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에 이 위기가 상당기간 저성장 위기 반복 국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것이 위기에 대한 처방은 되지 못하겠지만, 노동자들의 고통을 그나마 완화시켜주는 효과가 있는 것은 분명하다. 또한 경제 위기 과정에서 위기 비용을 민간 자본이 일정하게 부담하는 방법으로서도 효과가 있다. 결국 노동자가 언젠가는 세금으로 매워야 하는 정부 재정 적자 방식보다 자본가들의 이윤을 일정하게 줄여 노동자들의 소득을 보전한다는 측면에서도 바람직하다.

미국 경제 정책 연구소는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최저임금인상이 국가 재정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경기 부양, 소득 재분배를 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정책 수단이라고 주장한다. 시간당 1달러의 최저임금인상은 분기당 800달러의 소비 증대로 이어지며, 지속적인 최저임금인상은 소비 성향 자체도 높인다. 저임금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은 임금 인상분 이상의 소비 확대로 이어져 생산과 소비의 선순환을 만들어 낸다는 것이다. 오바마 정부가 2009년 시급 7.25 달러를 시작으로 2011년까지 9.50 달러로 인상하기로 한 최저임금은 2009년 228만 가구에게 효과를 미치고, 2011년이 되면 965만 가구에 효과를 미친다. 이로 인한 소비 증대는 2009년 56억 달러, 2011년 420억 달러로 늘어난다고 추정하고 있다³⁾. 웬만한 정부 지출보다 나은 셈이다.

유럽에서 역시 비슷한 주장들이 여럿 제기되었다. 경제 위기가 한참이던 2009년 6월

3) Kai Filion(2009), "A STEALTH STIMULUS: How boosting the minimum wage is helping to support the economy", EPI Issue brief #255

유럽 의회 선거에서는 좌우를 가릴 것 없이 유럽 차원의 양질의 최저임금제도가 이야기 되었다. 각국 별로 임금 격차를 줄여 저임금 경쟁을 줄이고, 경제 위기에 대한 유럽 차원의 해법을 찾자는 취지였다.

1930년 대공황 당시 유럽에서 임금을 줄이면서 디플레이션이 발생했던 예를 반면교사로 삼자는 것이다. 경제 위기 초입이었던 2008년 10월에는 이미 유럽 의회에서 평균 임금 대비 60%의 최저임금 달성을 위한 위원회가 구성되어 활동하기도 했으며⁴⁾, 2010년 4월에는 벨기에 의회가 좀 더 구체적으로 이를 추진하기 위해 2010년 내에 빈곤선 이상의 유럽 최저임금 설정, 유럽연합 내 임금실태에 대한 구체적 조사, 사회적 파트너 간의 협의 등을 고용, 사회정책, 건강 및 소비 이사회(EPSCO)에서 실시하자고 제안하였다⁵⁾.

2010년 유럽 주요국의 최저임금 실질 인상률은 포르투갈 6.5%, 그리스 4.4%, 스페인 1.9%, 프랑스 1.7%, 네덜란드 1.0% 등이었다. 한국의 2010년 실질 인상률이 -0.1%였던 것을 감안하면 이들 국가들과의 정책적 차이를 알 수 있다. 심지어 이들 국가들은 최저임금 수준이 낮은 것도 아닌데,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은 2008년 기준으로 프랑스 50%, 그리스 41.3%, 네덜란드 37.6%, 스페인 35.3%, 포르투갈 33.2%이다⁶⁾. 참고로 한국은 2008년 24% 수준이었다.

경제 위기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손실을 어떻게 처리하느냐는 계급투쟁의 가장 중요한 문제 중 하나다. 부실 금융 기관에게는 수 조원의 지원을 해주면서도 노동자들의 임금은 철저히 억압하겠다는 것이 자본가들의 생각이다. 일반적으로 최저임금이 하락하는 가운데 노동자 전체 임금 상승이 이루어지기는 쉽지 않다. 노동자운동이 경제 위기를 보다 근본적인 노동자들의 노동권 향상의 계기로 가져가기 위해서 최저임금을 오히려 대폭 인상시키는 투쟁에 나서야 하는 이유다.

3) 여성 노동자의 노동권

마지막으로 최저임금은 전체 노동자의 42%를 지하는 여성 노동자의 노동권 문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중요하다. 저임금 노동자의 다수를

4) Thosten Schulten(2009), "Minimum wages in Europe: new debates against the background of economic crisis", ETUI Policy Brief Issue 2/2009

5) Thosten Schulten(2010), "Recent Developments of Minimum Wages in Europe under the Conditions of the Crisis", ETUC Collective Bargaining Coordination Committe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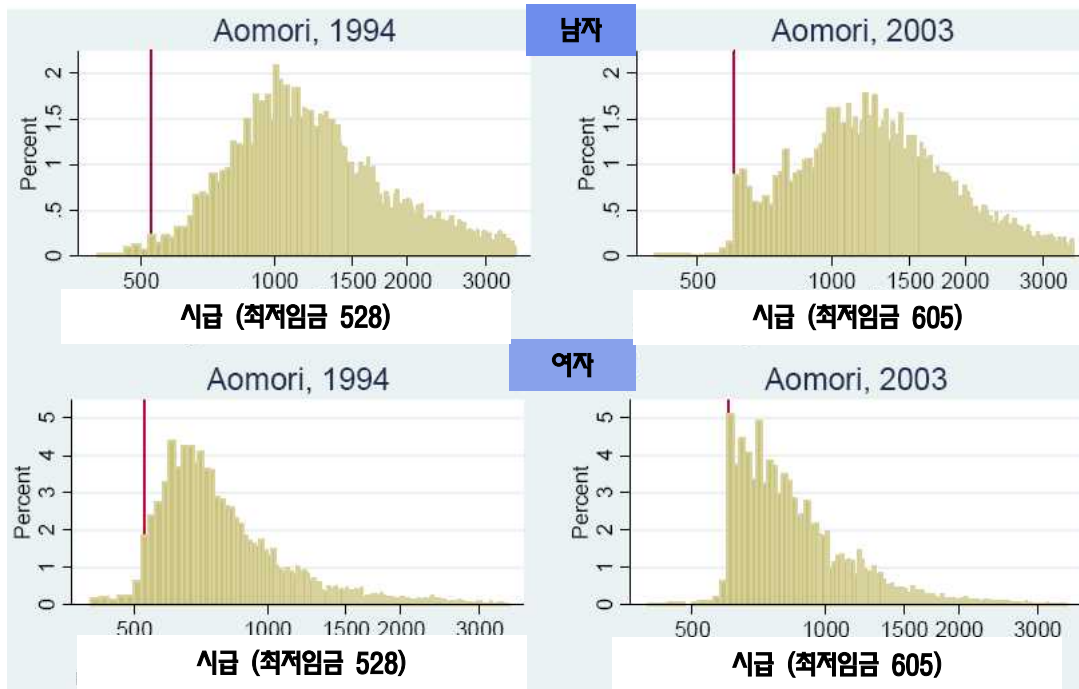
6) WSI Minimum Wage Database, OECD Database

차지하는 여성 노동자들은 노조 조직률 역시 매우 낮아 자본이 가장 손쉽게 임금 고용 문제를 공격하는 대상이 된다. 법정 최저임금제도는 이들 여성 노동자들에게는 유일한 임금 방어 도구이다.

신자유주의적 노동 유연화 정책이 세계적으로 시행된 이후 여성 노동자들은 더욱 최저 임금 수준으로 임금이 저하되었다. 그리고 경제 위기 시기에 가장 빠르게 임금 저하가 이루어졌던 노동자들도 역시 여성 노동자들이다.

한 예로 일본의 남성, 여성의 임금 계층 조사를 벌인 한 실증 조사에 따르면 남성 노동자에 비해 여성 노동자는 경제 위기 시기에 아주 빠르게 최저임금선으로 임금이 후퇴하는 결과를 보였다⁷⁾. 아래 그림은 90년대 초반 불황이 시작된 일본 아오모리 지역의 임금 계층 변화를 보여준다. 10여 년의 경제 위기가 계속된 후 남성 노동자에 비해 여성 노동자가 훨씬 더 최저임금 수준으로 임금이 하락한 것을 볼 수 있다.

그림 2 > 아오모리 지역의 임금 계층 변화



출처: Ryo Kambayashi et al(2010)

한국의 경우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가 늦었고, 장기 불황과 같은 상황이 존재하지 않아

7) Ryo Kambayashi et al(2010), "The Minimum Wage in a Deflationary Economy: The Japanese Experience, 1994-2003", IZA DP No.4949

가시적인 임금 이동 현상이 관측되지는 않는다. 하지만 저성장 시대가 한동안 계속된다면 남성 노동자에 비해 저임금 계층에 몰려 있는 한국 여성 노동자들의 임금 하락은 일본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을 것이다.

한국 노동자운동의 중차대한 과제 중 하나는 여성 노동권 문제를 노동자 운동의 중심 과제로 만드는 것이다. 계급 대표성의 문제만이 아니라 남성 중심의 노동자운동을 근본적으로 혁신하기 위해서도 그러하다. 저성장 위기 반복 시대의 최대 피해자가 될 여성 노동자들의 노동권 방어를 위한 최저임금 투쟁은 여성 노동자들이 노동자운동에 함께 해 나가는데 중요한 매개가 될 것이다.

○ 최저임금투쟁을 전체 운동의 과제로 만들기 위해 필요한 것들

최저임금인상은 경제 위기 과정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투쟁 과제다. 하지만 이미 우리 모두가 익히 경험하고 있듯이 그 중요성만큼 투쟁이 조직되지는 못하고 있다. 2011년 좀 더 일보 전진된 투쟁을 위해 필요한 과제들을 살펴본다.

1) 대중적 운동을 위한 최저임금투쟁의 프로세스 변화 :

최저임금을 포함하는 공동 임단투 기획

민주노총의 최저임금 투쟁이 위력적이지 못한 이유는 무엇보다 조직된 노동자 다수가 최저임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크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2006년 조사에 따르면 임금 10분위 계층 중 최저임금 근방 계층이라 할 1분위 노동자들의 양노총 조합원 비율은 0.7%, 약 1만3천여 명⁸⁾에 불과했다.

조직된 노동자와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 분포 형태 역시 비대칭적이다. 2009년 최저임금 미달자는 전체 임금노동자의 13%에 달하는 210만 명인데, 미달자 중 사업장 규모로 보면 10인 미만 사업장이 67%고, 고용형태로 보면 비정규직이 93%다.⁹⁾ 2008년 노동조합 현황을 보면 10인 미만 사업장의 조합원은 0.3%이며¹⁰⁾, 비정규직 조합원은 3% 미만이다.

8) 김유선(2007), “한국의 노동조합 조직연구”

9) 김유선(2010),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2010년 3월 경찰부가조사 결과)”, 노동사회 153호

10) 김정환 외(2009), “2009 노동조합 조직 현황 분석”, 한국노동연구원

따라서 조직 노동자들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크지 않은 상황에서 최저임금투쟁을 보다 대중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의식적 매개들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 투쟁의 물꼬를 터 최저임금을 획기적으로 인상시킨다면 최저임금으로 임금을 보장 받는 노동자들이 늘어나고, 그만큼 투쟁은 더욱 확대될 수 있다.

예를 들면, 2009년 평균임금 대비 25% 수준인 최저임금이 평균임금 대비 35% 수준으로 오른다면 조합원의 3% 정도가, 45% 수준까지 오른다면 조합원의 7% 이상이 최저임금에 직접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투쟁의 물꼬를 어떻게 틀 것이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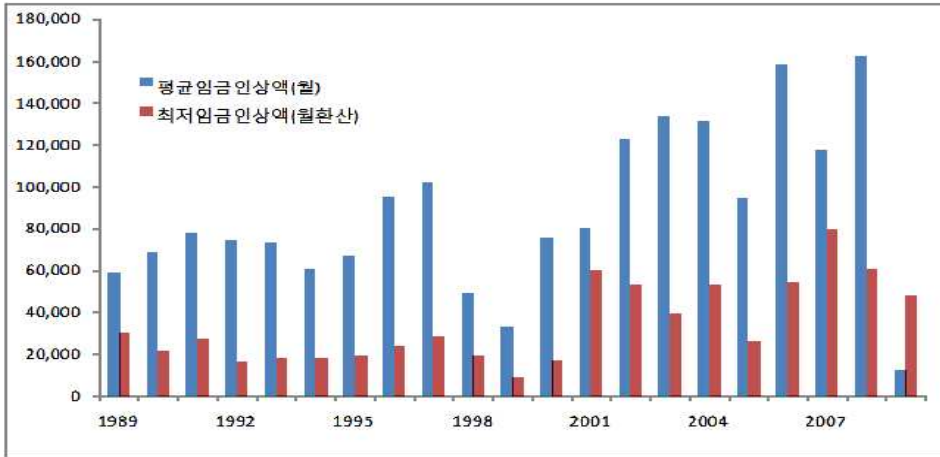
당장 필요한 것은 다수 조합원들의 임투와 연계할 수 있는 매개들을 찾는 것이다. 즉 최저임금투쟁부터 산별 기업별 임투까지를 하나의 과정으로 이어갈 수 있는 프로세스를 만들어 봐야 한다는 것이다.

가장 간단하게는 연초 발표되는 민주노총 임금 인상 요구액과 최저임금인상액을 동일액수로 맞추며 전국적 임금 요구 설정 틀을 하나로 만드는 것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민주노총 임금 요구안은 조합원 생계비 조사를 통해 임금 인상액을 설정하고 전체 노동자 평균 임금의 절반을 최저임금요구안으로 만든다. 이 과정부터 하나의 틀이 필요하다. 같은 액수의 정액 인상을 요구하며,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한 공동 틀을 만드는 것이다¹¹⁾.

이는 상징적인 수준만이 아니라 이후 최저임금 인상의 합당한 근거를 만드는 일에서도 중요하다. 아래 그림에서 보듯이 사실 액수로 보면 최저임금 인상액과 평균 임금 인상액은 매년 크게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인상률은 최저임금이 높을 수도 있지만 최저임금이 워낙 저점에서 출발한 까닭에 인상률로 양자를 비교하는 것이 무의미하다. 격차 해소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양자의 정액인상분이 비슷해져야 성과가 있다.

11) 2010년의 예를 보자. 민주노총 임금 요구안은 3.9인 가구 기준으로 월임금총액 339,716원 인상(통상급 258,864원, 기본급 175,293원)이다. 최저임금은 2009년 사업체임금근로시간조사에서 발표된 평균 임금 2,166,477원의 50%인 1,083,239원(40시간)으로, 시급으로는 5,180원이다.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들의 경우 대부분이 상여나 수당이 없거나 매우 적기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액은 노동자 평균 임금의 월임금총액 인상액에 해당한다. 동일액수의 인상을 요구할 경우 최저임금 인상액은 시급 기준으로 1,625원이다.

그림 3 > 최저임금 및 평균임금 인상액



자료: 최저임금위원회, 노동부

물론 민주노총 임금인상 요구액은 현실에서 한계가 큰 것도 사실이다. 한국 산업 구조에서 기업별 지불 능력의 차이가 크고, 시기 집중 임단투의 전통도 많이 무너진 조건에서 민주노총 임금인상 요구안이 기업 또는 산별 임투에 미치는 영향력은 매우 제한적이다.

하지만 산별 혹은 기업별 임투 의제 설정 과정에서부터 최저임금인상액과 노조 임금 인상액을 함께 고민할 수 있다면 그것부터가 큰 전진이다. 자본가들의 임금 이데올로기를 벗어나기 위한 교육 효과와 더불어 이후 대중적 투쟁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기초를 닦는 일이기 때문이다.

2) 최저임금 결정 체계 개선 요구 : 정부의 책임과 결정 주체를 투명하게 드러내는 것이 핵심

한국의 최저임금은 당해 3월 31일까지 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 심의를 최저임금위원회에 요청하면, 생계비전문위원회와 임금수준전문위원회의 조사를 거쳐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안을 6월 29일까지 결정하는 방식이다.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은 노동자, 사용자, 공익 대표 각 9명으로 이루어지며, 위원들은 노동부 장관의 제청에 의해 대통령이 위촉한다.

그런데 문제는 이 번 최저임금 결정 방식에서도 보았듯이 노동자 대표와 사용자 대표가 최저임금안에 합의를 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매년 최저임금 결정 시기가 다가오면 사용자 측 또는 노동자 측이 대립하는 가운데, 정부 의지를 대표하

는 공익 위원들이 최저임금안을 결정하였다. 교섭 방식의 모양이지만 사실은 정부가 단독으로 결정하는 구조인 것이다.

이러한 폐단으로 인해 매년 최저임금 결정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되었다. 오래 전부터 진보 진영에서는 50%를 법정 최저임금 산정의 기준으로 정하자는 주장이 있었고, 최근에는 민주당에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정하는 최저임금안의 하한선을 물가 상승률로 정하는 법안을 국회에 상정하기도 했다.

국외의 사례를 보면 교섭 방식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대표적 나라는 그리스다. 그리스는 총연맹과 전국사용자단체가 2년 마다 전국 교섭(EGSSEs)을 벌여 최저임금 인상을 결정한다. 정부는 협상 중에 개입하지 않으며, 협상이 결렬 되었을 때 최저임금인상액을 권고 정도 한다. 하지만 강제력은 없다¹²⁾. 이러한 노자간의 교섭을 위해 그리스 노동자 운동은 최저임금 투쟁을 가장 활발하게 하는 나라 중 하나다. 2009년 12월에는 최저임금 8.1% 인상 요구를 들고 민간부분이 총파업에 돌입하기도 했으며, 올해 재정 긴축 반대 투쟁에서도 최저임금 인상 요구는 핵심 요구안 중 하나였다. 그리스 노동자 운동은 투쟁을 통해 2000년 평균 임금 대비 37%이던 최저임금을 2008년 41.3%까지 끌어 올렸다.

법정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나라 중 참고할만한 사례는 프랑스다. 프랑스는 최저임금을 소비자 물가 인상률, 노동자 임금 인상에 따른 구매력 상승률, 정부 재량이라는 세 가지 요소로 결정한다. 앞의 두 가지 요소는 객관적 지표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고, 정부 재량에 따른 인상률은 단체교섭을 위한 전국위원회(CNNC)에 동수로 참여하는 노동자 대표와 사용자 대표의 의견을 수렴해 결정한다. 지금까지는 정부 재량에 의한 인상폭이 커서 노동조합이 대체로 만족할 만한 결정이 내려졌다¹³⁾. 프랑스는 1995년에 이미 평균 임금 대비 최저임금이 48%에 도달했고, 2005년 이후로 50%를 유지하고 있다.

교섭 방식의 경우 노동자운동의 힘과 전국 단체 교섭 제도의 안정성 여부가, 법정 근거에 의한 정부 결정 방식은 정부의 임금 정책이 최저임금 결정의 중요한 변수다.

양자가 장단이 있지만 한국의 최저임금위원회 결정 방식보다는 모두 낫다. 무엇보다 결

12) EIRO(2007), "Comparative study on statutory minimum wages - The case of Greece"

13) 장신철(2007), "프랑스의 최저임금제도", 국제노동브리프 2007년 6호

정의 주체가 선명하기 때문이다. 노동자 입장에서 책임져야 할 자가 누구인가가 투명하게 드러난다는 것이다. 한국의 최저임금결정 방식은 실상 정부가 결정권을 쥐고 있으면서도, 공익위원 노동자위원 사용자 위원이 3자 교섭을 하는 형태다.

단 한국의 경우 그리스와 같은 노사 교섭을 바로 도입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낮은 수준의 산별 교섭도 제도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제도적으로 초기업적 교섭을 제약하고 있는 한국 상황에서 아직 노사 전국 교섭은 무리다.

제도적 개선은 우선 최저임금위원회 뒤에 숨어 있는 정부의 책임과 역할을 투명하게 드러내는 방향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일부에서 주장하는 것과 같이 경직적인 기준을 법제화하는 것보다는 법적 기준과 정부 재량권을 통해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프랑스식 제도가 더 바람직해 보인다. 현재 정치 구조에서 장기적으로 노동자에게 유리한 법적 기준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고, 법적 기준으로만 최저임금이 결정되는 것은 대중운동 활성화에도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이다.

일정 기준과 정부 재량권이 존재한다면 노동자 운동은 대중투쟁을 통해 정부에 최저임금인상을 분명하게 요구할 수 있을 것이다.

3) 최저임금위반 사업장에 대한 감시와 노조 임투를 통한 최저임금 실질화

마지막으로 지속적으로 노동자운동 진영의 최저임금위반 사업장에 대한 감시가 필요하다.

정부 통계에 따르면 2008년 최저임금미만 사업장의 노동자는 전체 노동자의 10.8%에 달하고, 2009년 8월 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를 분석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통계에 따르면 2009년 최저임금미만 사업장 노동자는 12.8%에 달한다. 210만명 규모다.

표 1 > 연도별 법정 최저임금 현황과 영향률 추정(단위 : 천명, %)

법정최저임금		시간당 임금	2007.8		2008.3		2008.8		2009.3		2009.8		2010.3		최저임금 영향률
연도	시급		수	비율	수	비율	수	비율	수	비율	수	비율	수	비율	
2007년	3,480	3480원미만	1,891	11.9	1,613	10.1	1,437	8.9	1,436	8.9	1,312	8.0	1,152	6.9	4.5
2008년	3,770	3770원미만	2,277	14.3	1,929	12.1	1,746	10.8	1,715	10.7	1,600	9.7	1,412	8.5	2.4
2009년	4,000	4000원미만					2,287	14.2	2,221	13.8	2,104	12.8	1,933	11.6	3.4
2010년	4,110	4110원미만									2,302	14.0	2,105	12.7	1.2

출처: 김유선(2010)

최저임금인상에도 불구하고 혜택을 받지 못하는 노동자가 늘어난다면 최저임금인상의 동인 자체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일본의 경우 최저임금 미만율은 2007년 1.1%¹⁴⁾에 불과하다. 최저임금수준이 전체 노동자 평균 임금의 30% 수준으로 한국보다도 높은 것을 감안하면 한국 정부의 관리 감독이 사실상 형편없다는 것을 말해준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제도를 통해 노동조합의 영향력을 강화해 나간다는 취지에서 정부 관리 감독 기능 강화와 더불어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을 직접 응징하는 운동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 초기업 교섭도, 심지어는 노동조합 존재 자체도 위협받는 한국 상황에서 효력이 가장 넓은 최저임금제도는 임단협을 지키듯이 노동조합 스스로가 지켜나가야 하는 협약이며, 노동자들에게 노동조합의 필요성을 알려나갈 수 있는 중요한 도구다.

더불어 노동자운동은 최저임금인상을 현실에서 실질화시키는 운동 역시 강화해야 한다. 자본이 최저임금제도를 현실에서 무력화시키는 여러 방법이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자본가들은 여러 수단들을 줄이는 방법으로 최저임금인상이 임금 총액 인상으로 바로 이어지지 않도록 조정 한다. 최저임금은 통상임금 범위에서만 규정된다. 제조업의 경우 임금 제도를 월급제로 점차 바꾸어나가는 운동을 계속해나가야 할 것이고, 서비스업종의 경우 최저임금으로 산입되지 않는 여러 임금들을 최저임금 인상 시 함께 연동해 인상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야 한다.

<끝>

14) 최저임금위원회(2009), “주요국가들의 최저임금제도”